

기업활력법의 추진성과와 보완방향*

주지환 부연구위원 | 박나연 연구원 | 박성근 연구위원

- 산업부는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하 기활법)을 통해 기업들의 사업재편을 지원**
 - 최근 석유화학, 철강 등에서의 과잉공급이 장기화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사업재편 지원제도로서의 기활법의 필요성과 정책적 역할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증가
- 기활법은 대기업 협력업체를 포함한 중소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제도를 활용하는 등 산업 현장의 변화와 혁신을 촉진하는 기반을 마련**
 - 다만, 최근의 경제 여건을 감안할 때 산업 전반의 근본적이고 신속한 구조 전환이 요구되는 만큼,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대기업과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필요
- 법·제도 정비와 실질적 인센티브 강화를 통해 대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제도의 실효성과 산업적 파급력을 높여야 할 필요**
 - 기업이 사업재편 과정에서 직면하는 어려움을 해소해 주는 상법 등 특례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회사 관련 법체계의 정비도 요구
- 보완방향**
 - (대기업 대상 맞춤형 지원 및 참여 확대)** 기업규모나 성장단계 등에 따라 승인기업을 세분화하여, 그룹별로 차별화된 절차와 맞춤형 제도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대기업의 참여 유인 강화
 -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촉진)** 대·중소기업이 조인트 벤처 형태로 자본·기술·시장 네트워크를 공유하거나, 일정 기준을 충족한 중소기업을 대기업이 전략적 흡수합병하는 방식 등 적용 가능
 - (복수기업 간 사업재편 및 M&A 활성화 기반 조성)** 기업활력법 내에 복수기업 연계형 사업재편과 M&A 유형을 명확히 규정하고, 공정거래법·상법 등 관계 법령과의 연계를 통해 신속하고 유연한 절차 설계

핵심 주제어: 사업재편, 기업활력법, 과잉공급

* 본고는 주지환 외(2024), 「선제적 사업재편제도의 효과성 분석과 활성화 방안 연구」, 연구보고서 2024-17, 산업연구원의 일부 내용을 재구성.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하 기활법)을 통해 기업들의 사업재편을 지원

- 기활법은 기업의 사업구조 개편과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2016년 8월 한시법으로 시행(1기)되었으며, 2기(2019. 11), 3기(2024. 7) 개정을 통해 적용 기한과 지원 범위 등을 보완함.
 - 최근 기존 규제 완화, 동반성장 기반 조성 등의 지원 내용을 신설하는 등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재편을 추진하고, 복합 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 발전을 거듭
- 최근 석유화학, 철강 등에서의 과잉공급이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사업재편 지원제도로서의 기활법의 필요성과 정책적 역할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커지고 있음.
 - 중국산 저가 공세 등에 따라 국내 기업들은 경영 효율화를 넘어 생존을 위한 전략적 사업재편이 요구^{1,2}

최근 참여기업들은 대기업 협력업체를 포함한 중소기업의 신산업 진출이 다수를 차지

- 2024년 말 기준, 기활법상 사업재편 승인을 받은 총 530개 기업 중 대기업은 11개사(2.1%)이며, 대기업의 협력사들로 주로 구성된 중소기업이 436개사(82.3%)로 대부분을 차지(〈표 1〉 참조)
 - 업종별로 살펴보면, 자동차부품이 161개사(30.4%)로 나타나 전체 승인기업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
 - 기활법 시행 초기에는 자동차, 조선, 철강, 석유화학 등 일부 업종을 중심으로 과잉공급 해소 목적의 사업재편이 주를 이루었으나, 2019년 한시법 연장을 통해 신산업 진출 유형이 새롭게 추가되면서 사업재편 유형의 중심축이 변화
 - * 2024년 말 기준 전체 승인기업 530개사 중 신산업 진출 유형 404개사(76.2%), 과잉공급 해소 유형 115개사(21.7%)
 - 2010년 중반 조선, 철강, 석유화학 등에서 나타났던 과잉공급 상황이 점차 완화되었고, 박성근·박나연(2024)이 지적한 바와 같이 과잉공급 요건은 신산업 진출에 비해 적용 기준이 엄격하고 까다로워, 결과적으로 신산업 진출 유형이 사업재편 승인 유형의 중심으로 자리 잡음.³
 - 과잉공급 요건은 “국내외 시장 상황에서 공급의 증가와 수요의 감소로 인해 기업의 매출과 이익률이 감소하거나 비용 대비 제품 또는 서비스의 가격변화율이 둔화되는 경우”로 정의하며 구체적인 요건은 사업재편계획 실시지침 제4조를 참조

〈표 1〉 전체 승인기업 대상 연도별 승인유형

단위: 개사, %

승인유형	승인연도		기업규모			합계
	2016~2019년	2020~2024년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과잉공급 해소	109	6	7	12	96	115
(비중)	(20.6)	(1.1)	(1.3)	(2.3)	(18.1)	(21.7)
신산업 진출	0	404	4	71	329	404
(비중)	(0.0)	(76.2)	(0.8)	(13.4)	(62.1)	(76.2)
기타	0	11	0	0	11	11
(비중)	(0.0)	(2.1)	(0.0)	(0.0)	(2.1)	(2.1)
합계	109	421	11	83	436	530
(비중)	(20.6)	(79.4)	(2.1)	(15.7)	(82.3)	(100.0)

자료: 대한상공회의소 사업재편종합지원센터(2025)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주: 기타 승인유형은 산업위기지역 주된 산업에 속한 기업, 디지털전환, 탄소중립, 공급망 위협 해소 등 네 가지를 포함하며, 산업위기지역 주된 산업에 속한 기업 유형은 2019년 개정, 디지털전환, 탄소중립, 공급망 위협 해소 유형은 2024년 개정을 통해 새롭게 추가.

1 한국경제신문(2025), “물려날 곳이 없다…공멸 위기에 롯데케미칼·HD현대 ‘빅딜’”, 6월 11일,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61189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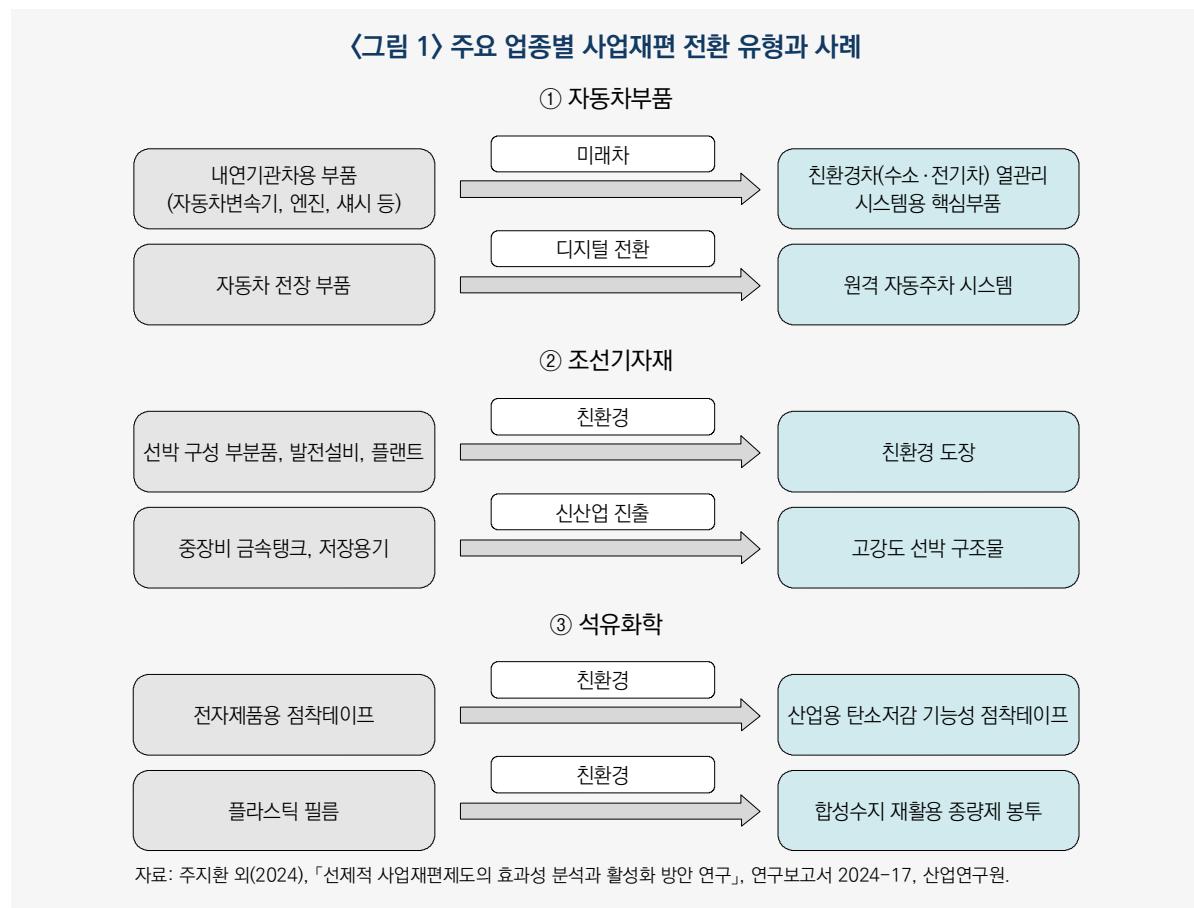
2 서울파이낸스(2025), “중국發 위협 전방위 확대…車·철강 ‘불안감 확산’”, 6월 8일, <https://seoulfn.com/news/articleView.html?idxno=559356>.

3 박성근·박나연(2024), “기업활력법의 과잉공급 요건 검토와 개선 방향”, 「KIET 산업경제」, 2024년 7월호, 산업연구원.

- 승인유형별-기업규모별로 보면, 과잉공급 해소 유형의 총 115개 승인기업 중 대기업이 7개사(6.1%), 중견기업 12개사(10.4%), 중소기업이 96개사(83.5%)였으며, 신산업 진출 유형의 404개 승인기업 중 대기업은 4개사 (1.0%), 중견기업 71개사(17.6%), 중소기업 329개사(81.4%)로 나타남.
- 이처럼 그간 기활법은 중소·중견기업을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으며, 특히 과잉공급 해소 유형에서는 대기업의 참여율이 신산업 진출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보이는 것이 특징

주요 업종의 승인기업들은 신산업 진출과 기술 고도화를 주요 방향으로 사업재편을 추진

- 승인기업들은 상당수가 대기업 협력업체이며 신산업 진출, 디지털 전환, 친환경·탄소중립 등의 다양한 분야로 사업재편을 추진하여 기술 고도화, 위기 극복, 산업·지역 발전 등의 성과 창출(〈그림 1〉 참조)
- 예를 들어, 승인기업 A사는 조선업 불황을 계기로 사업재편에 참여하고 친환경 알루미늄 선박 및 전기추진선을 개발하면서 글로벌 선도 기술을 확보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경영 위기를 극복함은 물론 해양산업 및 부산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



- 신규 사업 진출 또는 확대 과정에서 전체 승인기업의 14.9%가 기술 고도화 방향으로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등 산업 고도화와 미래 대응력 제고에 실질적으로 기여(〈표 2〉 참조)
- 상위 기술로 전환한 기업은 총 79개사로 하향 전환 기업(40개사) 대비 약 2배에 달하는 가운데, 중고위기술에서 고위기술 그리고 중저위기술에서 중고위기술로 전환한 사례가 개별 그룹에서는 가장 많았고, 서비스산업에서 기술군 내에 진입한 사례도 다수 확인

〈표 2〉 승인기업 산업기술 기준 사업재편 전후 방향

단위: 개사

사업재편 전	사업재편 후	고위기술	중고위기술	중저위기술	저위기술	서비스	합계
고위기술	54	13	2	0	9	78	
중고위기술	20	215	7	2	3	247	
중저위기술	10	20	48	1	3	82	
저위기술	4	3	0	15	0	22	
서비스	5	12	3	2	41	63	
합계	93	263	60	20	56	492	

자료: 대한상공회의소 사업재편종합지원센터(2025)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주: 전체 승인기업 530개사 중에서 철학나 폐업 등의 사유로 정상적인 사업재편 이행이 어려운 기업을 제외한 492개사를 대상으로 정리한 것임. 참고로, 고위기술, 중고위기술, 중저위기술, 저위기술 등의 네 가지 분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규정하는 기술 수준을 고려한 산업분류임. 예컨대 고도화 수준이 가장 높은 고위기술 산업에는 의약, 반도체, 디스플레이, 컴퓨터, 통신기기, 가전, 정밀기기, 전자, 항공 등이, 중고위기술 산업에는 석유화학, 정밀화학, 기타 전자부품, 전기기기, 일반목적기계, 특수목적기계, 자동차, 철도, 기타 수송장비 등이 각각 포함됨. 산업분류와 세부 업종에 대한 정보는 산업연구원 ISTANS (<https://istans.or.kr/main.html>)에서 확인 가능.

승인기업의 사업재편 사업 부문에서, 매출·고용·기술경쟁력·제품혁신 등을 중심으로 성과 창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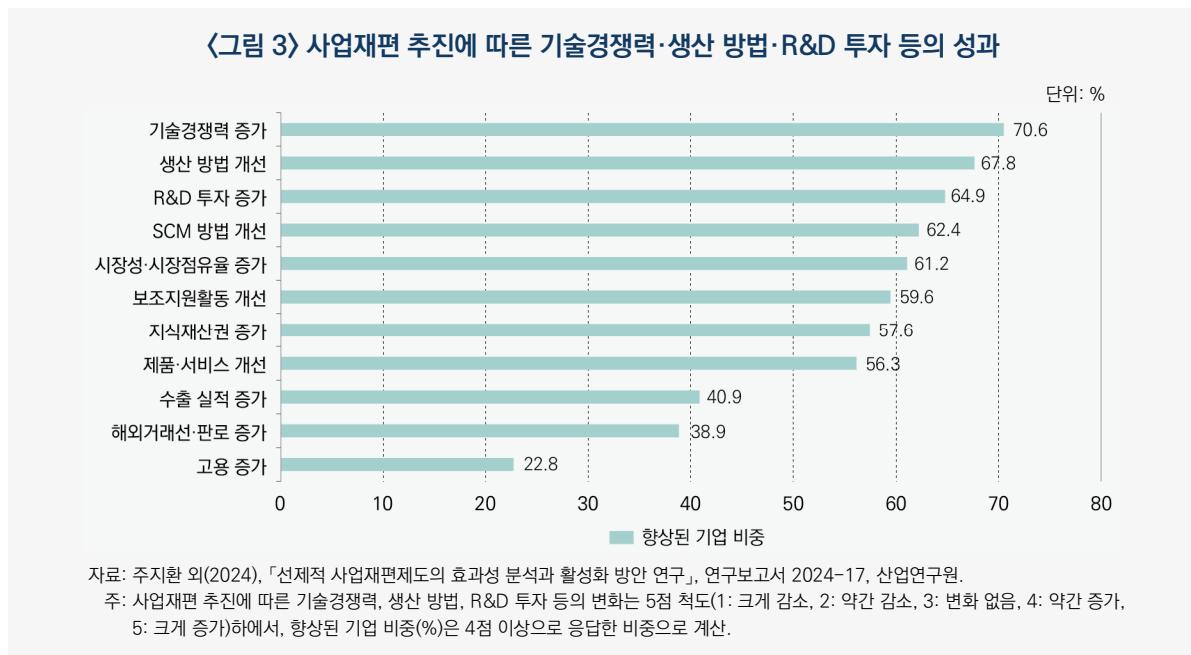
- 사업재편 성과는 1~2년 차의 초기 효과, 3년 차의 조정기, 4~5년 차의 성과 본격화로 이어지는 흐름
 - 매출액(승인연도=100)은 2년 차(111.4)까지 증가하다 3년 차에 소폭 둔화(110.2)되고, 5년 차에는 118.4로 회복하며 약 18.4% 증가
 - 신규 고용은 승인 이후 2년 차(33.3명)까지 증가하다가 3년 차(32.2명)에 소폭 하락한 후, 4년 차에 52.1명으로 급증하며 직전연도 대비 약 5.8배, 3년 차 대비 약 62% 증가
 - 매출과 고용에서 나타나는 '초기 성과-일시적 둔화-성과 본격화'의 단계적 흐름은 4년 차 이후까지 이어지는 꾸준한 후속 지원의 필요성을 시사

〈그림 2〉 승인기업 사업재편 사업 부문 매출 및 신규 고용 추이



자료: 주지환 외(2024), 「선제적 사업재편제도의 효과성 분석과 활성화 방안 연구」, 연구보고서 2024-17, 산업연구원.

주: 연도별 매출액 변화는 직전연도(T-1기), 승인연도(T기), 이행1차(T+1기), 이행2차(T+2기), 이행3차(T+3기), 이행4차(T+4기), 이행5차(T+5기)에 걸쳐 승인연도 매출액을 100점으로 고정했을 때 전후 기간(2023년이 속하는 연도까지만 응답)에서 사업재편 이행에 따른 신규 또는 확대된 사업부문의 매출 기여 성과를 나타냄.



- 사업전환 부문의 R&D 투자, 지식재산권 확보, 제품·서비스 및 공정 혁신 등에서도 실질적인 성과 확인 (〈그림 3〉 참조)

- 특히 기술경쟁력 증가를 경험한 기업 비중이 70.6%로 가장 높았으며, R&D 투자 증가(64.9%), 지식재산권 확보(57.6%) 부문에서도 절반 이상의 기업에서 긍정적 답변이 나타남.
- 공정 혁신 부문에서는 생산 방법(67.8%), SCM(62.4%), 보조지원활동(59.6%) 개선 등 다양한 효과가 나타났고, 제품·서비스 개선은 승인기업의 56.3%가 경험

금융지원의 효과가 우수하며, 규모가 큰 기업에서 재무성과 개선이 돌보여

- 기업이 받은 인센티브를 금융지원(연구개발, 금융·자금, 세제 등)과 비금융지원(컨설팅, 교육, 고용 등) 유형으로 나누어 경제적 효과를 살펴본 결과, 금융지원 혜택을 받은 기업에서 매출이 유의하게 증가
- 금융·세제 등 기업의 재무적 흐름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금융지원의 정책 효과가 상대적으로 우수함을 확인

〈표 3〉 사업재편 인센티브 분류

금융지원	비금융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재편 승인기업 전용 R&D • 금리우대(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 정부지원사업 지원대상 추천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요건 완화 • 자산매각 지원(캠코) • 자산매각양도차익 과세이연 • 이월결손금 100% 공제 • 합병·증자 등 자본금 증가 시 등록면허세 50% 감면 • 산업용지 시장가격 매각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재편 이행전략 컨설팅 • 사업재편 애로해소 컨설팅 • 사업재편 아카데미 지원 • 직업능력훈련비 지원 비율 확대 • 고용안정 장려금 • 상법상 규제 완화 • 공정거래법상 규제 완화 • 스마트공장 구축사업 신청 시 우대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재편종합지원센터(2024), 「사업재편 기업 종합지원 방안 가이드 2025」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주: 스마트공장 지원 사업은 제조 현장의 경쟁력 제고 및 스마트공장 구축 부담 완화를 위해 공장 구축을 지원하는 정부사업이며, 기업활력법에 따른 사업재편 승인기업의 경우 해당 사업 심사 과정에서 가산점(3점)이 부여됨. 자세한 내용은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홈페이지(<https://www.smart-factory.kr/>)에서 확인 가능.

- 대기업 및 중견기업에서 매출 개선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남을 확인⁴
 - 이는 규모가 큰 기업들이 사업재편 추진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보유한 양질의 인적·물적 자본, 혁신 역량 등을 정부지원과 함께 적극 활용함으로써, 우수한 재무성과를 나타낸 것으로 보임.
 - 대·중견기업 중에서 과잉공급 해소 유형으로 참여한 경우, 매출과 ROA(수익성) 개선 효과를 확인
 - 과잉공급 해소 유형으로 참여한 대·중견기업은 530개사(45차까지의 승인기업 전체) 중 21개사이며, 석유화학(5개사), 철강(4개사) 업종이 가장 많음(대부분이 제도 시행 초기에 참여했으며, 2019년 이후에는 2개사에 불과).
 - 최근 참여가 활발한 신산업 진출 유형에서는 규모가 작은 소기업을 중심으로 매출이 개선됨을 확인

현황·성과 요약 및 시사점

- 그동안 기활법은 대기업의 협력사를 중심으로 한 중소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제도를 활용함으로써, 산업 현장의 변화와 혁신을 촉진하는 기반을 마련
 - 기활법은 기업들이 사업구조를 유연하게 전환하고 신성장동력 확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중요한 역할 수행
- 다만, 최근의 경제 여건을 감안할 때 산업 전반의 근본적이고 신속한 구조 전환이 필요하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대·중견기업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필요
 - 실증분석 결과를 고려하면, 대·중견기업의 사업재편 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나는 만큼, 향후 기활법이 대·중견 기업의 자발적이고 전략적인 사업재편을 보다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체계로 발전할 필요
- 일본은 「산업경쟁력강화법」을 통해 대기업 주도의 복수기업 연계형 사업재편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산업의 구조전환과 경쟁력 제고를 도모(김규판, 2018)⁵
 - 기업활력법은 일본의 산업경쟁력강화법을 벤치마킹한 제도로, 일본의 경우 사업재편계획의 70% 이상이 대기업인 반면, 한국의 기업활력법 승인 기업은 80% 이상이 중소기업이며 대기업은 2%에 불과
 - 일본은 특히 분할·매각 등을 활용한 'Out & In 복합형' 사업재편 방식이 일반적이며, 이를 통해 저수익 사업 정리와 신사업 진출이 병행되는 효율적 사업 포트폴리오 전환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
 - 일본의 산업경쟁력강화법 제1호 승인 사례인 미쓰비시중공업과 히타치제작소의 사업재편은 양사가 보유한 가스터빈 사업과 판로를 통합하여 화력발전 플랜트 전반에 걸친 토클 솔루션을 제공하는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글로벌 시장에서 화력발전 분야 선도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전략적 사업재편 사례로 평가
 - 반면, 기활법은 신사업을 추가하는 'In형' 신산업 진출 유형이 사업재편의 주류를 이룸.
- 법·제도 정비와 실질적 인센티브 강화를 통해 대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제도의 실효성과 산업적 파급력을 높여야 할 필요
 - 기업이 사업재편 과정에서 직면하는 어려움을 해소해 주는 상법 등 특례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며, 장기적으로는 회사 관련 법체계의 정비도 요구
 - 예컨대, 일본은 2003년 산업활력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조직재편, 합병, 회사분할, 감자, 현물배당 등과 관련한 11개의 상법 특례조치 중 상당수가 2005년 회사법 제정 시 일반 조항으로 흡수·정착(김규판, 2018)
 - 이는 특례 조치로 시작된 제도적 지원이 궁극적으로 법체계 전반의 개편으로까지 확장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

⁴ 주지환 외(2024)에서는 사업재편 승인기업의 효과를 식별하기 위해 패널 이중차분(DiD) 모형을 적용하였으며, 사업재편 전후의 성과 변화(매출, 고용, ROA)를 비수혜기업과 비교함으로써 상대적인 효과를 추정하였음. 또한 기업의 규모, 업종, 승인유형 등에 따른 이질성을 반영하여, 기업 특성에 따른 차별적인 정책 효과를 함께 분석함.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보고서 제4장 "사업재편제도의 효과성 분석"을 참조.

⁵ 김규판(2018), 「일본의 산업경쟁력강화법 시행 성과: 사업재편을 중심으로」, 연구자료 18-06,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보완방향 ① 대기업 대상 맞춤형 지원 및 참여 확대 방안 마련

- 대기업의 사업재편 참여도가 낮은 주된 원인은 제도적 요인과 제도 외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
 - 지원 내용이 대기업이 나서서 신청할 정도의 실질적인 혜택이 부족하다는 제도적 요인과 함께 내부 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 신기술 공개에 따른 기회비용 발생, 상장회사로서 주주 동의 절차의 부담 등의 제도 외적인 요인들이 상존
- 대기업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대기업 맞춤형 인센티브를 도입하는 등 대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재편 참여 유인을 강화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
 - 기업 규모나 성장 단계에 따라 기업들을 세분화하고, 그룹별로 차별화된 선정 절차를 통해 승인기업을 선정한 후, 그에 맞는 맞춤형 제도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대기업의 참여 유인을 높일 수 있을 것
 - 예를 들어, 대기업은 회사법 관련 제도가 강화되어 규제를 실질적으로 더 많이 받으므로, 대기업들이 본 제도를 통해 사업재편 참여 시 규제 완화 또는 패스트트랙(Fast Track) 등을 통해 사업재편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는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할 필요

보완방향 ②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촉진 방안 모색

- 기활법에서도 점차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실질적인 협력 추진에 많은 제약 존재
 - 기업 간 규모·역량 격차, 정보 비대칭, 기술 유출 우려, 신뢰 부족 등 다양한 요인이 협력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
 - 대기업 입장에서는 상생협력 이행 시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등으로 인한 대외적 리스크 부담이 커, 유연한 규제 환경과 단계적 협력 구조 설계가 필요
- 대·중소기업이 조인트 벤처 형태로 자본·기술·시장 네트워크를 공유하거나, 일정 기준을 충족한 중소 기업을 대기업이 전략적 흡수합병하는 방식 등을 고려할 필요
 - 이 경우 중소기업의 경영권 안정성과 의사결정 권한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며, 대기업의 참여 유인을 강화할 수 있는 맞춤형 정책 지원도 병행되어야 함.
 - 특히 협력의 성과가 미흡할 경우 중소기업의 생존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초기에는 중소기업이 단독으로 경쟁력을 확보한 뒤, 겸증된 성과를 바탕으로 대기업과의 협력으로 확장하는 방식이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음.
- 정책적 측면에서는 상생협력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도록 인센티브 제공과 협력 기반 조성을 유기적으로 연계해야 함.
 - 상생협력 참여 기업에 대해 사업재편 승인 평가 시 가산점 부여, 재정·세제 인센티브 확대, 맞춤형 금융지원 등 유인 구조를 정비할 필요
 - 공동 품질관리, 탄소중립, 디지털 전환 등 협력 과제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정부 공동기금 조성 또는 정책 자금 연계 지원 등을 통해 민관 협력의 실질적 시너지를 높일 수 있음.
 - 아울러 기술 및 수요 정보 공유를 위한 상생 플랫폼, 정기 네트워킹 행사, 성과 측정 및 모범사례 확산 프로그램 등을 통해 기업 간 협력 기반을 구조적으로 확산하는 노력을 병행해야 함.
 - 이는 단순한 개별 기업 간 협력을 넘어서, 산업 생태계 차원의 구조적 전환으로 확산하기 위한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

보완방향 ③ 복수기업 간 사업재편 및 M&A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 산업 구조 전환의 속도를 높이고 구조적 과잉 해소를 실질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복수기업 간 사업재편과 인수합병(M&A)의 활성화가 필수
 - 특히, 과잉공급 산업에서의 구조조정은 개별 기업 차원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복수기업 간 협력적 사업재편을 통한 공급조정 및 사업전환이 중요한 과제
 - 복수기업 간 사업재편은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연관된다는 점에서 실행이 쉽지 않으며, 제도적 기반뿐만 아니라 기업 간 신뢰 구축, 문화적 수용성, 협상 중재 체계 등 포괄적 여건 조성이 병행되어야 함.
- 기업활력법 내 인수합병을 포함한 복수기업 연계형 사업재편 유형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관련 법령 간 연계를 기반으로 유연하고 신속한 절차 설계를 추진할 필요
 - 나아가 기업 간 사업재편이 보다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법령 간 중복규제 해소와 함께, 제도 운용 전반의 협업 체계를 강화할 필요
- 산업 전환이 개별 기업의 승인제도에 국한되지 않고 산업 전반의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산업 차원의 구조조정 촉진 전략과 기업 간 연계를 강화하는 제도적 노력이 요구
 - 사업재편 승인제도의 단위 기업 중심 운용에서 벗어나, 산업 전체의 연쇄적 변화와 시너지 창출로 확장될 수 있도록 제도 방향을 보완해야 할 시점
 - 글로벌 탈탄소·디지털 전환, 공급망 재편 흐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경우 기업 및 국가 경쟁력이 저하될 수 있는 만큼, 특히 대기업들이 국가 전략과 연계된 구조적 전환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인 구조를 개선할 필요

저자

주지환 산업구조·정책효과분석실 부연구위원 | jhjoo@kiet.re.kr | 044-287-3248
 박나연 산업구조·정책효과분석실 연구원 | nypark@kiet.re.kr | 044-287-3036
 박성근 산업구조·정책효과분석실 연구위원 | sungpark@kiet.re.kr | 044-287-3172